

‘26. 7.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기 술 보 급 과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6-72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김제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6조)
- 식물방제관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여
- 라. 비용추계서 : 여
- 마.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 바.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자. 입법예고 기간 : 2026. 5. 22. ~ 6. 11.(20일간)

4. 따로 붙임

- 가. 조례안
- 나. 비용추계서
-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3조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조
- 아.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조례 제정 요청 공문 및 예시(안)
 -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 타 지자체 조례 (익산시)
- 자. 방침결정문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김제시 농경지에 발생한 농작물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김제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둘 수 있다.

제4조(예찰·방제단 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김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농업인,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예찰·방제단의 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3. 병해충 정보수집 및 정보 전파
4.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
5.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
7.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8.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

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약,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찰·방제단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된 예찰·방제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실시중인 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안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농약,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추계(365백만원)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세출	합계	1,825	365	365	365	365	365
	국비	852.5	170.5	170.5	170.5	170.5	170.5
	도비	60	12	12	12	12	12
	시비	912.5	182.5	182.5	182.5	182.5	182.5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비 확보

3. 작성자 식량작물팀장 김기영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365,000	365,000	365,000	365,000	365,000	1,825,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사무관리비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공공운영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국내여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료비		169,000	169,000	169,000	169,000	169,000	845,000
민간자본사업보조		156,000	156,000	156,000	156,000	156,000	780,000
재원 조달		365,000	365,000	365,000	365,000	365,000	1,825,000
의존 재원	소 계	182,500	182,500	182,500	182,500	182,500	912,500
	국비	170,500	170,500	170,500	170,500	170,500	852,500
	도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자체 수입	소 계	182,500	182,500	182,500	182,500	182,500	912,500
	시비	182,500	182,500	182,500	182,500	182,500	912,500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26)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술보급과-4313 (2026.6.2.)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외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전북김제026) 1부. 끝.

교육가족과장 영

주무관	이재	여성가족팀장	최남	교육가족과 과장영	2026. 6. 2.
함초자				장	김숙영
시행	교육가족과-19375	(2026. 6. 2.)	접수	기술보급과-4354	(2026. 6. 2.)
무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6	팩스번호	063-540-4016	/ tna.jn@korea.kr	/ 비공개(5,7)
다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전북김제026			
정 책 명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서명	기술보급과-4313		
	담당자명	조명현	전화번호	063-540-452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6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술보급과)	I. 개 요 ☐ 제정 목적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 빈도 변화에 따라서, 김제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주요 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 예찰·방제단 지원에 관한 사항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 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성별 고정관념 표현이 없으며,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균형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다만 향후 사업 운영 시 현장 방제업무 관련자 대상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지원 시 성별 및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지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6월 02일 김제시 복지환경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이미애/063-540-6906) 기술보급과장 귀하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의 건 조회 결과보고		
기술보급과-4301(2026. 6. 1.)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의건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조회기간 : 2026. 6. 1. ~ 6. 10. 3. 조회내용 :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 4. 조회결과 : 의견 없음 5. 금후계획 : 조례 제정 행정절차 이행. 끝.		

기술보급과-주	대관 2026. 6. 11.	전송
무관 조영현	식량작물팀장 김기연	기술보급과장
협조자		
시행 기술보급과-4553	접수	
우 5441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59. (교동, 김제시농업기술센터)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4526	팩스번호 063-540-2798	/ whaud333@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김제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
제목 예고 결과보고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 실
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5. 22. ~ 6. 11.
3. 예고방법 : 김제시 시보(공고 제2026-665호)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5. 글후계획 : 조례 제정 행정절차 이행, 끝.

기술보급과 주
무관 조영현
협조자
시행 기술보급과-4588
무 5441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59, (고동, 김제시농업기술센터)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4526 팩스번호 063-540-2798 / shoud332@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화도시 김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621(2026.6.26.)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25.(목) 09:2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9	행정지원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30	세 정 과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31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026-32	교육가족과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2026-33	스마트유통과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6	2026-34	기술보급과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35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8	2026-36	수도사업소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교육가족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스마트유통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범**

의회법무팀장 **이예라**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전결 2026. 6. 29.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8673

접수

무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흥양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kirus@korea.kr

/ 무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식물방역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3. 10. 24.>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
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한다)
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을 포함한다)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포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 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포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

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25. 1. 31.>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24. 1. 23.>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24. 1.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3. 14.]

[농촌진흥청고시 제2025-7호, 2025. 3.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분류동정"이란 병해충의 예찰과정 등에서 발견된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종명 및 계통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위험평가"란 병해충 분류동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분류동정이
끝난 병해충의 국내분포·국내자생·침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생태적
특성과 농작물에 대한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제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외래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 침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을 말한다.
4. "돌발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5.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의 침입 여부가 불확실한 병해충을 말한다.
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말한다.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조례 제정 요청 공문 및 예시(안)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1. 관련: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농촌진흥청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규정(제2025-7호) 및 농림축산식품부-1360('26.4.3), 재해대응과-1892(2026. 5. 6.)

2.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제3항에 의거 시·도 및 시·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도록 되어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 부재로 정책 적합성 미흡사례로 지적(국조실) 되었습니다.

3. 이에 '27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예산 배정시 관련 조례 제정 시군에 한해 배정하도록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미제정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8월 까지 제정, 차년도 예산 배정시 불이익 없도록 하여주시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례 제정 현황 및 결과를 9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현황 1부.
2.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수신자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과장), 군산시장(기술보급과장), 익산시장(기술보급과장), 정읍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남원시장(현장지원과장), 김제시장(기술보급과장), 완주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진안군수(기술보급과장), 무주군수(기술연구과장), 장수군수(기술보급과장), 임실군수(기술보급과장), 순창군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장(기술지원과장),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주무관	송병목	작물보호실장	정동인	기술보급과장	전결 2026. 5. 6. 윤대순
-----	------------	--------	------------	--------	------------------------------

참조자

시행 기술보급과-3504 (2026. 5. 6.) 접수 기술보급과-3682 (2026. 5. 6.)

무 5459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413,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 / http://www.jeonbuk.go.kr
술보급과 (신흥동)

전화번호 063-290-6223 팩스번호 063-290-6218 / sbr4238@korea.kr / 대한민국 공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초화

○○시·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시·군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군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방제협의회장은 예찰·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 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등 10인 이내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예찰·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과 여비) 예찰·방제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방역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 ① 시장·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교육) 시장·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는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예시문)로서 시·군별 조례 제정 시 지역특성 및 현황에 맞게 조정·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현황

2026년 과수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현황

I 목 적

-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
-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II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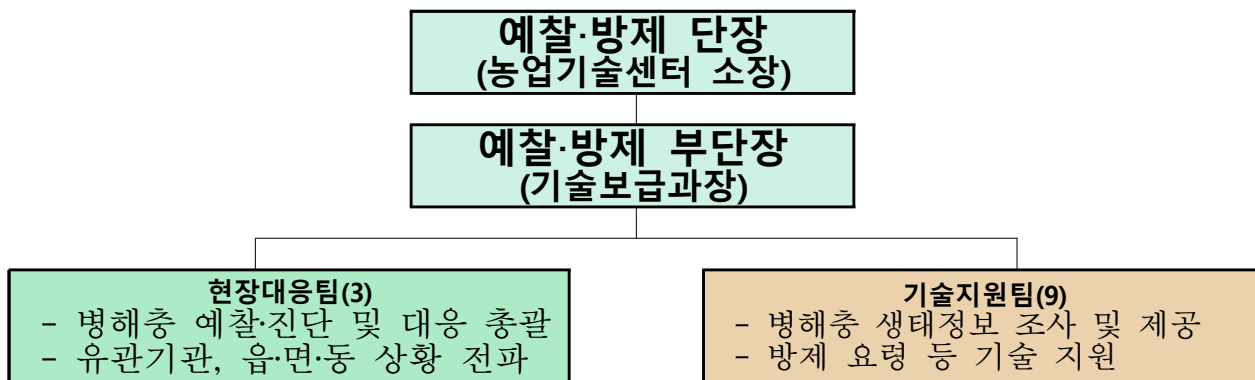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39조(예찰 및 방제)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진청 고시 제 2017-36호)

III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6. 1. ~ 12월(12개월)
- 사 업 비 : 47,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병해충 예찰·방제 전문 인력 : 3월 ~ 11월(9개월), 1명
 -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 및 유지 관리
 - 예찰 트랩 등 예찰방제단 운영 재료
 - 병해충 예찰방제단 홍보 및 현지 출장 여비 등
- 사업내용
 - 국가관리(외래·검역) 병해충 및 과수 주요 병해충 예찰 조사
 - * 검역병해충 발생 확인 및 조기방제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상시 예찰 필수
 - * 예찰·방제 전문인력은 과수 생육기간 동안 주 2회 이상 주요 재배지 및 병해충 발생 상습지역 예찰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조기 예찰 추진
 - 병해충 진단, 임시조치, 분포조사, 방제추진(방제대상확인, 방제현장 관리·감독, 손실보상금산정 등), 방제 효과확인 등 추진
 - 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예찰·방제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 및 교육추진
 - * 검역병해충 해당작목 농업인대상 예찰·방제교육 및 홍보 추진

IV 세부추진계획

1. 과수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2. 과수 병해충 예찰·방제단 주요 임무

- 과수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방제비 등 예산 지원
- 방제기술·정보 제공 및 현장점검, 손실보상금 등 집행, 사후 관리
- 지역별 주요취합 병해충 발생정보 및 상황 홍보·지도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읍·면·동 협조체계 구축

3. 인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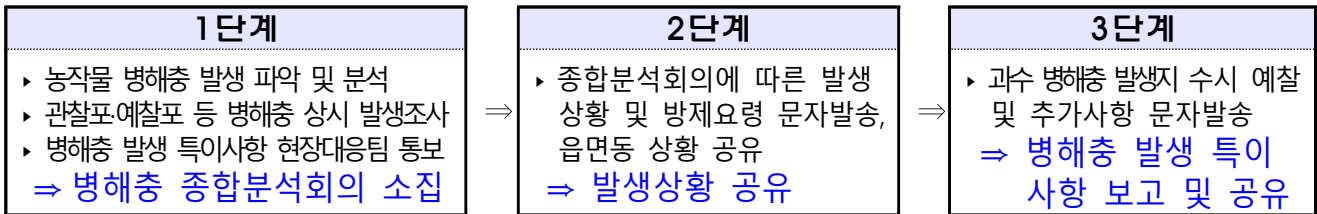
- 현장대응팀(3명)

구분	소속	직위/직급	임무	비고
팀장	기술보급과	과수팀장	예찰·방제 활동 관리	
팀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예찰·진단 및 대응 실무	
팀원	기술보급과	기간제근로자	수시 예찰·진단 수행	

- 기술지원팀(9명)

구분	소속	직위/직급	임무	비고
팀장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장	방제·기술지원 총괄	
팀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방제·기술지원 수행	식량작물
팀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방제·기술지원 수행	식량작물
팀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방제·기술지원 수행	식량작물
팀원	기술보급과	특화작목팀장	방제·기술지원 관리	채소, 화훼
팀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방제·기술지원 수행	채소, 화훼
팀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방제·기술지원 수행	채소, 화훼
팀원	기술보급과	신소득작목팀장	방제·기술지원 관리	감자
팀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방제·기술지원 수행	감자

4. 현장지도 및 홍보(문자발송 등) 체계



V 과수 주요 병해충 예찰

1. 국가검역병해충 발생 예찰 및 현장지도

〈과수 화상병〉

○ 추진방향

- ▶ 화상병 발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제 철저 및 수시 정밀예찰
- ▶ 화상병 발병시 긴급 대응방안 마련 및 확산 조기 방지

○ 추진내용

- ▶ (사 전 예 방) 동계기 께양제거 및 과원 잔재물 신속 폐기
- ▶ (화상병 예방) 예측시스템을 통한 약제 적기 및 신속방제 지도·확인
- ▶ (정 밀 예 찰) 병해충 예찰단 운영으로 수시, 정밀예찰 - 연중
- ▶ (위험도대응) 화상병 발병시 긴급·신속 방제 가능 매뉴얼 마련
- ▶ (교육 및 홍보) 농업인 교육 및 홍보 화상병 철저 예방

병 해 충	대상과종 (면 적)	조 사 기 간		조사 면적(ha)	조사범위	비고
화상병 / 가지 검은마름병	사과, 배 (104ha)	1차	4월 하순 ~ 5월 상순 (2주)	20	외부전정 농가	병해충예찰 방제 전문 인력
		2차	5월 하순 ~ 6월 상순 (2주)	52	전체면적 1/2	
		3차	6월 하순 ~ 7월 상순 (2주)	52	전체면적 1/2	
		4차	10월 상순부터 2주	20	외부전정 농가	
		수시 예찰	1~12월	104	전체면적	

○ 그간 추진상황

▶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대책 기간 운영 : 1 ~ 4월

- 궤양 예찰 및 제거, 작업도구 소독 등 홍보, 중점농가 특별관리 등
- 화상병 방제약제 및 농기구 소독 알콜 지원 104ha, 190농가
- 과수 화상병 교육 : 2회 (사과, 배 각각 1회)
- 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과 합동 예찰 및 예찰방제단 운영
- 과수화상병 중점예찰 : 외부전정 농가 및 주산단지
- 화상병 약제 적기방제 지도 : 동계방제, 개화기 및 추가방제

○ 금후계획

▶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단 운영(2인1조) : 1 ~ 12월

- 약제 방제지도 및 농가 현장지도, 화상병 시기별 예방 홍보
- 화상병 예방 및 전정도구 등 알콜 소독 지도
- 현수막 읍면·동 게첩(21개소), 문자 발송, 배너제작, 언론보도 등 홍보

▶ 농가 신고제 운영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시 신고해 조치 할 수 있도록 연중 실시

※ 2026년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방제약제 선정

구 분	과종	방제시기	방제적기	상표명	품 목 명
화 상 병 (3종)	배, 사과	동계방제	3월말	석회보르도	
	배	개화기 1차	4월초~ 중순	옥싸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다이하드레이트 입상수화제
	사과	개화기 1차	4월초~ 중순	아그렙토	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배, 사과	개화기 2차	1차 후 5~7일후	비 온	아시벤졸라-에스-메틸 입상수화제
돌발해충 (1종)	배	유충기	5월중~ 6월초	트랜스폼	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
	사과, 복숭아	유충기	다발생기	앰플리고	클로란트라닐리프롤·람다사이할로트린 액상수화제
	감	유충기	다발생기	청실홍실	디노테퓨란·에토펜프록스 수화제

2. 과수 주요 해충 발생 예찰 및 합동방제

○ 과수 돌발해충 발생 예찰

병 해 충	조사대상	조사면적	조 사 기 간		조사내용
돌발해충	농림지	50ha (농경지 30ha/ 인근산림 20ha)	1차	3월 상순부터 2주	월동난 조사
			2차	7월 말 ~ 8월 초	성충기 발생 조사

○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 운영 : 연 2회 (5월, 9월)

- ▶ 대상해충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 ▶ 방제대상 : 농경지, 가로수·공원, 인근 산림 - 2회(유충기, 성충기)
- ▶ 방제방법 : 산림녹지과와 협업방제
 - 기술보급과 : 과수농가 방제약제 공급 - 개별방제
 - 산림녹지과 : 농경지 인근 산림

○ 과수 주요 해충 발생 예찰 및 현장지도

- ▶ 예찰 트랩 설치 : 과종별 주요 재배지 및 해충 발생 상습지에 설치

해충명	주요 과수	예찰트랩	예찰 목적	설치시기	집중예찰
복숭아순나방	사과, 복숭아, 배	성페르몬	발생 개시, 최성기	3월하순~4월초	4~9월
사과순나방	사과	성페르몬	방제 적기 판단	4월상순	4~8월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 자두	성페르몬	과실 가해 예측	4월중순	5~8월
사과심식나방	사과	성페르몬	유충 발생시기 예측	4월중·하순	5~9월
복숭아유리나방	복숭아	성페르몬	성충 출현 확인	5월상순	5~7월
과실파리류	감, 복숭아, 사과	유인트랩	검역·외래 해충 예측	5월중·하순	6~9월

▶ 응애 발생 예찰 : 전년도 발생 포장 집중 예찰

- 사과응애·점박이응애·배응애로 6~8월 고온·건조시 급증,
신초·잎에 피해 많고 사과는 응애 방제 실패시 수량·착색 저하
- 확대경 이용 잎 뒷면 육안 조사, 과원당 10주 이상 샘플 조사

3. 포도 · 배 관찰포 조사

○ 포도 관찰포 조사

조사 과종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 사 항 목		조사 횟수	비 고
포도	5개소	5월	개화상황	포도 개화 및 착립일(전년대비), 시설포도 생육상황	1회	조사직후 국가병해충 관리시스템, 농업관측센터 입력
		6월	착과상황	주당 착과량, 착과상황, 생육상황	1회	
		7월	생육상황	시설 및 노지포도 생육상황	1회	
		8월	생산 예상량	주당 최종착과수, 송이 평균무게 10a당 생산예상량, 평균당도	1회	
		9월	저장상황	품종별 저장량, 유통가격(2kg)	1회	

○ 배 관찰포 조사

조사 과종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 사 항 목		조사 횟수	비 고
배	5개소	4월	개화상황	최초개화일, 만개기 및 개화량(전년대비), 총화총수, 개화상황	1회	조사직후 국가병해충 관리시스템, 농업관측센터 입력
		6월	착과상황	주당 착과수, 착과상황, 10a당 봉지수	1회	
		7월	생육상황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상황	1회	
		8월	생산 예상량	주당 최종착과수, 과당 평균무게 10a당 생산예상량, 평균 산 · 당도	1회	
		9월	저장상황	10a당 저장량, 수출배 유통량	1회	

- 포도 · 배 병해충 발생 상황 :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입력
- 포도(4 ~ 7월), 배(5 ~ 9월) 월 2회 조사

VI 기대효과

- 병해충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확산 사전 차단
- 과수 농업인 방제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구축
- 김제시 과수 병해충 관리의 선제적 · 상시 대응체계 확립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군명	조례명	제정일
1	전주시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4.07.09.
2	군산시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5.12.24.
3	익산시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1.02.10.
4	김제시	-	-
5	정읍시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5.11.05.
6	남원시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6.07.08.
7	완주군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4.11.26.
8	진안군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6.09.30.
9	무주군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16.
10	장수군	-	-
11	임실군	「임실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3.07.05.
12	순창군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12.24.
13	고창군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16.11.04.
14	부안군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05.19.

□ 참고자료 : 타 지자체 조례 [익산시]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21.02.10 조례 제2072호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475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익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

9.>

1. 총괄반

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나.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읍·면·동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2. 예찰·방제반

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나.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제5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
방농촌지도사

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
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72호, 2021.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방침결정문

등록번호	기술보급과-446	주무관	팀 장	과 장	소 장	김제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결 재
등록일자	2026.05.21	조명현	김기영	김영희	이웅준	이희서	
전제일자	2026.05.21						
공개구분	비공개 (c)						
의회농업수산위원회 비상대책 김제		협 조	예 산 팀 장 채기아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의회법무팀장 이태라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안)



김 제 시
기술보급과